

# 「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1. 검토경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 2. 제안이유

- 2023년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산단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근의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코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사무 위탁 개요

- 위탁 사무명 : 「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
- 민간위탁기간 : 계약일부터 2025. 12. 31.까지

\* 현재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검단·이시아폴리스·금호 워터폴리스산단과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설정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김희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35

○ 설립일자 : 2006. 1. 13

○ 조 직

- 임원 : 이사장 1, 부이사장 1, 전무이사 1, 이사 11

- 직원 : 5명

○ 주요사업 : 기업체 지원 및 행정업무 등 및 산업단지 관리업무

○ 위탁 사무 범위 : 율하도시검단산업단지 관리업무

- 산업단지 행정(민원) 업무

·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및 해지 업무

·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및 등록 업무

· 산업용지·공장 등 임대신고 및 처분 신청·신고

·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관리·운영(법·규정상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녹지시설 등 제외)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 포함) 수립에 관한 업무

·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및 교육·연수사업

· 입주기업체의 수출 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

·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 산업단지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 산업단지간 연계 활성화 사업
  - 산업단지 정비사업 등

○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민간위탁금 : 7,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	사업내용
인건비	7	사무종사자(사원) 기본급 일부 지원 *기존 위탁금에 신규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위탁비용 증액(7백만원) 지원

※검단·이시아폴리스·금호위터폴리스 민간위탁금 : 291백만원('23년 기준)

위탁업무	위탁금	비고
산단관리(운영)	289	일반회계
산단 환경정비 등	2	

□ 위탁시설 현황

- 명칭 :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 조성기간 : 2017년 ~ 2024년('23년 말 분양 예정)
- 위치 : 대구 동구 율하동 814-1번지 일원
- 면적 : 167천㎡(산업시설 59천㎡)
- 유치업종 : 지식, 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업종

## 4. 검토의견

### □ 제안 취지의 적정성

- 본 동의안은 올해 연말 분양을 앞둔 “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 (이하 “울하산단”이라한다.)의 입주계약 등 기업지원 업무와 효율적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이를 산단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안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 민간위탁 필요성 및 추진근거 검토

- 올해 연말 분양을 앞둔 울하산단은 산단 용지·시설의 임대 및 사후관리와 입주계약 등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산업단지 관리’ 업무의 개시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무는 단순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작용 또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써 산단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집적법」과 관계 지침<sup>8)</sup>에 의하면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8)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2호, 2022. 9. 30.)

관리기관<sup>9)</sup>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산업단지 관리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공단 등에 신규 지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① 관리업무는 법·영·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공단 또는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하여 신규 지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위탁기관의 적정성

- 율하산단의 관리사무를 위탁코자 하는 (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은 2006년 1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검단산단의 관리업무를 수탁 운영중에 있으며, '21년 1월부터는 신규 산업단지인 금호위터폴리스와 이시아폴리스의 관리업무를 수탁하여 운영중임.
- 다른 시 산업단지관리공단과 비교해볼 때 율하산단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입주기업의 접근성이 높아 기업지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17년 이상 장기간 검단산단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산단 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입증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리공단이 4명의 사무종사원 인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19년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에서 검단산단 관리사무가 '다'등급으로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21년 금호위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의 관리업무를 추가 수탁하면서도 사무종사자 1인을 확충한 데 그치고 있고, 이번 율하산단의 위탁계획에서도 별다른 인원확충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만한 사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 계획 주요 내용 검토

-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 내용의 적정성  
사무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검단산단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중인 검단·금호위터폴리

스·이시아폴리스 산단관리업무의 위탁종료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산단관리 업무의 일체로, 위탁 기간과 위탁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 법령과 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되었음.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위탁계약 체결) ① (생략)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와 관한 업무
-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 ○ 소요예산의 적정성

소요예산은 '23년 기준 총 7,000천원으로 기존 관리공단 사무 종사자 1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예산 소요를 최소화한 부분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율하산단 추가 사무위탁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지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향후 직무분석 등을 통해 적절한 예산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임.

#### \* 대구시 관내 산업단지 관리사무 위탁 현황

산단명	전체면적 (산업용지)	입주업체수 ('23.6월)	위탁금 예산 (백만원)	사무종사자 수	주요 사무
검 단	782 (570)	578	29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등록</li> <li>○ 입주 및 변경계약</li> <li>○ 공장용지 처분, 양도, 임대신고 등</li> <li>○ 입주기업체 지원 업무</li> <li>○ 기타 공공시설 유지관리 (이상 주요 사무는 이하 산단관리 사무 공통 사항임)</li> </ul>
금 호	1,186 (340)	분양중			
이시아	1,176 (169)	58			
성 서	12,620 (7,371)	2,860	1,564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 개선·관리</li> <li>○ 근로복지회관 관리운영</li> <li>○ 출판산업단지 관리</li> <li>○ 통근버스(4대) 운영 등</li> <li>* 관리비 미지원(자체수익 운영)</li> </ul>
달성1차	4,079 (2,518)	342	19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근버스(5대) 운영 등</li> <li>* 관리비 미지원(자체수익 운영)</li> </ul>
달성2차	2,705 (1,424)	290	86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근버스(1대) 운영 등</li> <li>* 관리비 미지원(한국산단공 관리)</li> </ul>
제3	1,685 (1,271)	2,440	69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산업센터 운영 등</li> </ul>
서대구	2,662 (1,287)	2,689	32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등</li> </ul>

○ 사전절차 이행, 민간위탁 추진일정

‘2023년 제3회 대구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신규 민간위탁사무 사전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의결(23. 8. 18.) 되었으며, 대구시는 시의회 동의 후 12월 중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할 계획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추진일정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p>「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p> <p>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b>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b>&lt;개정 2021.9.30.&gt;</p> <p>② (이하 생략)</p> <p>「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

## □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올해 연말 분양을 앞둔 “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사무를 산업단지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리적 인접성, 예산 절감, 행정의 효율성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동의안에서 제시한 위탁사무의 범위,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등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인 (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이 검단산단 외에도 '21년부터 신규 산단인 금호위터폴리스와 이시아폴리스 관리사무를 수탁하고 있는데 더하여, 별도 인력·조직 확충 없이 율하산단까지 추가 수탁하게 됨에 따라 사무 과중이 우려되는 바, 그에 따른 수탁사무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구시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